

『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 법령과 상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용어 등 정비(안 제2조)
- 시민의 책무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)

당초 :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→ 변경 :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

-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조례위임사항 규정 (안 제8조)
- 시민공용자전거 사고에 대한 이용자 책임 규정 삭제(안 제13조)
- 민간 자전거 교육·정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 삭제(안 제16조)
-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조직,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1조 제2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,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은
 -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시민공용 자전거 이용 규정 중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, 개정된 법령과 상충하는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